

## 화재보험의 우연성에 관한 획기적 고찰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2002년 8월 28일 화재보험 사안으로 우연성의 주장·입증책임에 대해 언급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손해보험약관에서는 「우연한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보험에서는 이런 취지의 명문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629조에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인 것을 필요로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화재보험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우연한 사고인 것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다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피고소인(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것이다.

나고야高裁 2002년 8월 28일 판결  
2002년 네 제932호  
보험금청구공소사건 (원고·나고야지방재판소  
1997년 와 제1197호)

### 【판례해설】

본 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

약에 따라 원고가 경영하는 점포가 화재로 연소한 손해에 대하여 화재보험금 6,910만엔과 지연 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보험회사)가 본 건 화재는 원고 또는 원고의 뜻을 받은 자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서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상에 관한 전표·장부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불의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이다.

원심인 나고야지방재판소에서는 본 건 화재는 보험금 목적으로 방화한 것에 의해서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는 사고조치 면책조항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불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고야고등재판소에 있어서 피공소인의 주장은 「손해보험약관은 상법629조가 정하는 대로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생긴 손해를 보험금에 의해서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보험금 청구자인 공소인에게는 본 건 화재가 우연한 사고라는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주장에 대한 동 고등재판소의 판단은, 본 건 화재보험보통약관에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언을 붙인 것이

없고, 단순히 화재를 보험사고로 하는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험금을 지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약관에서 사고 조치 면책조항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약관 중에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법대629조에 손해보험약관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라는 취지의 정의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면, 피공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보험금을 청구함에는 화재가 우연한 사고라는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보험회사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보험금 청구 측에 우연성의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2개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하나의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01년 4월 20일의 판결이다.

생명보험에 부가된 재해할증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불청구사건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자는 발생한 사고가 우연적인 사고인 것에 대해서 주장·입증하는 책임을 지우고, 더욱이 「발생한 사고가 우연적 사고인 것이 보험금청구권의 성립요건이라고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보험금의 부정청구가 용이해질 우려가 증대한 결과, 나아가서는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성실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의 2001년 4월 20일의 판결이다.

보통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 있어서 사고의 우연성이 문제가 된 사건에 있어서 우연성의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고, 계약 중에 있어서 고의면책의 규정은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확정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정하며, 고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더욱이, 하급심에서도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판례가 나와 있다.

하나의 마에바시(前橋)지방법판소 기류(桐生)지부의 2001년 10월 30일 판결, 또 하나는 도야마(富山)지방법판소 다카오카(高岡)지부의 2002년 1월 11일의 판결.

이와 같이, 화재보험 약관 중에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금 청구권자 측에 있어서 화재가 우연한 사고인 것을 입증·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판결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화재보험에 관한 소송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손해보험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㉞

— 보험매일신문(2002.10.1)

— 정리: 감사실 실장 박창복